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 - Doping Code) 주요 개정내용

항 목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강화된 제재	제10.2항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시도, 소지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은 2년이다.	제10.2.1항 도핑방지규정위반이 특정약물과 관련이 없고 선수나 기타 관계자가 해당 도핑방지규정위반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4년이다.
소재지정보등록 기간 변경	제2조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정의 2.4 소재지정보 제공 불응, 검사국제표준에 따라 선언된 검사 불이행 등의 경우, 18개월 동안 3번하였을 경우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구성	제2.4항 소재지정보제출 실패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의거 검사대상등록명부의 선수에 대한 12개월 동안 3번의 검사불이행 또는 제출불이행의 합산
특정 60분 지정 시간의 연장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해당되는 선수가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때 06:00부터 23:00까지 시간 동안에 특정 60분을 지정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해당되는 선수가 소재지정보를 제출할 때 05:00부터 23:00까지 시간 동안에 특정 60분을 지정
공모·금지된 연루 조항 구체화	제2.8항 경기기간 중에 선수에게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선수에게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금지되는 금지방법 또는 금지약물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 또는 위반 시도와 관련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여타 형태의 연루	제2.9항 공모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관여된 의도적인 공모의 기타 다른 유형, 다른 관계자에 의한 규약 제10.12.1항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시도 제2.10항 금지된 연루 직접적으로 도핑방지기구의 관할하에 있는 선수 또는 관계자가 선수지원요원과 연루되는 행위
국제경기연맹의 치료목적사용 면책 신청	제4.4항 국제경기연맹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선수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관할 국제경기연맹에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3.1항 선수가 이미 국가도핑방지기구로부터 해당 약물 또는 방법에 대해 승인받은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부합한다면, 국제경기연맹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만약 선수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가 검토를 위해 세계도핑방지기구에 이 문제를 회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통지를 받고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연장	제17조 소멸시효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8년이 경과한 해당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선수 또는 기타 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착수할 수 없다.	제17조 시효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제기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조치가 시작되지 않는 한,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도핑방지규정 위반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